

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7일
신청인	상호(법인명)	
	소재지	전화번호
	우편물수령지	전자우편주소
	근로자수	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
	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
	사업 개시일(개업연월일)	
	업태	종목 (주생산업종)
보험가입 신청내용	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	등급(원)
	사업의 내용	
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(일용근로자 포함)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		예 [] 아니오 []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(보험가입자)
[]보험사무대행기관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선택)

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: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
-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신청인 성명,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: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
-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: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안함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처리사항

보험관계 성립일	승인 여부	[]승인 []불승인
보험관리번호		

담당직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 2. 주민등록표 초본(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. 다만,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을 말합니다)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. 3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표 등본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또는 고용노동부(1350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,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,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.
- 「고용보험법」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기준보수액(등급)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의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,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 기준보수액(등급)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(등급)이 적용됩니다.
- 「고용보험법」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(일용근로자, 단기에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).
-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, 위탁·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
 -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이하 “기준월”)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
 -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
 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
 -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
 -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, 홍수,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
 -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·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,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
 -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, 심신장애, 질병,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
 -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
 -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
 -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
-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%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.

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“근로자 수” 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.
- “사업개시일” 란과 “업태와 종목” 란에는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,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.
- “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” 란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3항·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.
- “사업의 내용” 란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.
- “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(일용근로자 포함)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” 란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.